





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52호 2024. 7. 29.(월)

조 례

○ 자치법규 정정사항 알림----- 2

공 고

회람				
거ㅁ				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**홍보과 ☎** 061-270-8539

<자치법규 정정사항 알림>

- 1. 근거 : 지방자치법 제33조(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)
- 2. 조례 제3813호 「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(2024.07.08.공포) 관련하여 오기 (誤記)가 발견되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, 시보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함.

시보정정사항

○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[2024.07.09.자 목포시보 제1649호]

시보내용	정정사항	비고		
제6조(지방보조금의 반환)	제6조(지방보조금의 반환)			
(생략)	(생략)			
1 · 2 (생 략)	1 · 2 (생 략)			
3. 법령 및 교부조건 등	3. 법령 및 교부조건 등	시보 제1649호 제84쪽 제18형		
교부결정의 내용 또는	교부결정의 내용 또는			
<mark>법려</mark> 에 따른 시장의 처	<mark>법령</mark> 에 따른 시장의 처			
분을 <mark>위한한</mark> 경우	분을 위한 경우			

목포시 공고 제 2024 -1112호

공인의 등록 공고

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사 유 :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인 등록

2. 최초 사용일 및 폐기일 : 2024. 7. 16.(화)

3. 수 량 : (등록) 2개

4. 공인명 및 인영

구분	공 인 명	인 영	규격, 서체	비고
등록	전략산업과 분임징수관인	목포시전 략산업과분 임징수관인	1.8cm*1.8cm 푸른전남체	
등록	전략산업과 일상경비출납원인	목포시전략 산업과일상 경비출납원	1.8cm*1.8cm 푸른전남체	

2024년 7월 19일

목 포 시 장